| 붙임 | 노동시간 단축제도(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사무형 위탁사무) |
|---|---|

## □ 개 요

○ 위탁사무명 / 수 탁 기 관 : 노동시간 단축제도 / 경기도일자리재단

○ 위 탁 기 간 / 위 탁 비 용 : 25.3.1. ~ 26.12.31. / 15,046백만원(도비 100%)

## □ 평가결과

○ 평가총괄표

| 평가영역 | 평가범주 | 평가지표 | 지표배점 | 세부배점 | 득점 |
|---|---|---|---|---|---|
| 공통 사무 | 1. 사업 인프라 | 1-1. 조직 및 인력 운영 | 7.00 | - | 7.00 |
| | |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 | 4.00 | 4.00 |
| | |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 3.00 | 3.00 |
| | |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 8.00 | - | 7.00 |
| | | 1-2-1. 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 | 4.00 | 4.00 |
| | |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 4.00 | 3.00 |
| | 2. 사업활동 |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 10.00 | - | 10.00 |
| | |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 | 3.00 | 3.00 |
| | | 2-1-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 | 2.00 | 2.00 |
| | | 2-1-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 | 1.00 | 1.00 |
| | | 2-1-4.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 | 4.00 | 4.00 |
| | | 2-2. 도정 이행 노력 | 7.00 | - | 7.00 |
| | | 2-2-1. 도정방침 이해도 | | 3.00 | 3.00 |
| | | 2-2-1-1. 고용안정 노력 | | 1.00 | 1.00 |
| | | 2-2-1-2.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노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 1.00 | 1.00 |
| | | 2-2-1-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 | 1.00 | 1.00 |
| | | 2-2-2. 도정연계성 및 발전 기여도 | | 4.00 | 4.00 |
| 개별 사무 | 3. 사업성과 | 3-1. 사업성과(※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2~3개 개발) | 45.00 | - | 43.00 |
| | | 3-1-1. 사업성과지표 1 (세부배점 자율설정) | | 8.00 | 8.00 |
| | | 3-1-2. 사업성과지표 2 (세부배점 자율설정) | | 12.00 | 12.00 |
| | | 3-1-3. 사업성과지표 3 (세부배점 자율설정) | | 10.00 | 10.00 |
| | | 3-1-4.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목표 적절성 | | 15.00 | 13.00 |
| | | 3-2.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 | 3.00 | 3.00 | 3.00 |
| | 4. 지도점검 이행노력 | 4-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 5.00 | 2.50 | 2.50 |
| | | 4-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 | 2.50 | 2.50 |
| 사용자 만족도 | 5. 만족도 제고노력 | 5-1. 도민 만족도 조사 | 15.00 | 10.00 | 9.00 |
| | | 5-2. 도민 만족도 제고 노력 | | 5.00 | 5.00 |
| 6. 감점사례 | | 1. 임금체불(관계 법령, 계약 및 수탁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 -2.00 | -2.00 | - |
| | | 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 -2.00 | -2.00 | - |
| | | 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 -2.00 | -2.00 | - |
| | | 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 -2.00 | -2.00 | - |
| | | 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 -2.00 | -2.00 | - |
| | | 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 -2.00 | -2.00 | - |
| | | 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 -2.00 | -2.00 | - |
| | | 8.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 -2.00 | -2.00 | - |
| 합계 | | | 100.00 | - | 96 |

○ 평가결과 보고서(세부사항)

# 1. 사업인프라

## 1-1. 조직 및 인력운영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 - 사업추진조직·인력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br>- 조직 및 인력(관련 기술인력)의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 4.00 | 4.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사업 총괄, 참여기업 모집·선정, 기업관리, 단축장려금 지급, 컨설팅 및 효과성 분석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업무분장과 담당자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여 전담조직 운영

□ 일자리·기업 지원 사업 수행경험을 보유한 팀장 및 사업 총괄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참여기업 및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행정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규모에 맞춰 인력운영체계 강화

□ 경기도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신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신속하게 대응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 수탁기관의 기술지식능력 및 전문역량 보유<br>-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경험<br>- 위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 | 3.00 | 3.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일자리·고용지원 전문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다양한 일자리 및 기업지원 사업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참여기업 모집·선정부터 지원금 지급, 기업관리 및 성과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

□ 노무·경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기관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현장 정착과 정책효과의 객관적 검증 지원

□ 기업 선정·재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1-2-1. 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 - 위탁금 집행내역<br>- 위탁금 관리방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4.00 | 4.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위탁금의 투명한 관리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 위·수탁 협약 및 재단 회계·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하고, 정산 결과 별도 지적 사항 없이 적정하게 사업비 집행

○ 전체 사업비 10,954백만원 중 장려금 9,681백만원(88.4%)을 편성하는 등 사업목적과 직접 연계되는 기업지원 중심으로 예산을 구성하고, 인건비·홍보비·회의비 등 사업운영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기업지원금 지급 시 근태자료, 급여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요건 및 실제 노동시간 단축실적을 검증한 후 지급하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 사업비 집행현황 및 기업별 지원금 지급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적정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예방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 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효율성(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및 성과<br>- 당초 계획(사업추진시기)을 고려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방법(회계관리)<br>- 합리적인 예산운영,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4.00 | 3.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예산집행 및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컨설팅 및 효과성 분석, 홍보, 회의운영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계획에 따라 대부분 집행함

○ 단축장려금은 참여기업의 실제 노동시간 단축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단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사업성과와 연계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

○ 다만, 사업 첫해 참여기업의 상당수가 하반기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 가능기간이 당초 편성기간보다 짧아져 최종 예산집행률은 71% 수준에 그침

○ 향후 참여기업의 실제 사업 참여시기와 지원 가능기간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장려금 소요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2. 사업활동

###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위탁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협약내용 이행에 대한 점검과 보완대책 등을 종합평가 | 3.00 | 3.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사업목적에 따른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계획 이행

○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정착을 목표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 사전컨설팅 및 노사합의 → 노동시간 단축 시행 → 장려금 등 기업지원 → 운영실적 관리 → 효과성 분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사업추진체계 구축하고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기업 애로사항과 운영상 쟁점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함

○ 기업의 업종·근무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유형을 마련하여 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1-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 - 추진일정 계획상의 계획된 업무의 추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실시여부 및 수준<br>-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추진절차, 집행기준, 세부운영기준 등) 작성을 통한 시스템적 운영노력 및 성과<br>- 수탁재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책마련 및 예방활동<br>- 사업추진 상의 법규 및 규정, 지침준수 노력 및 성과<br>-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노력 (개인정보보호 전담자 지정, 교육 이수 의무화 등) | 2.00 | 2.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관련 법령, 위·수탁 협약 및 재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상시점검

○ 신규 시범사업으로 기존 운영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기준, 주 4.5일제 세부운영 기준, 지원금 집행기준 등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사업 관리체계 구축

○ 매월 근태·급여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금 지급 시 증빙자료와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부적정 집행 예방함. 또한 기업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참여기업의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사례집으로 제작·공유하여 사업 운영성과 확산 및 참여기업의 제도 정착 지원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1-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예방 활동,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방지 노력 및 성과 | 1.00 | 1.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사업 전 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 및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

○ 참여기업 선정·재선정 시 외부전문가 활용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컨설팅·효과성 분석 등 주요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기업지원금은 근태·급여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와 노동시간 단축실적을 검증하여 지급하고, 주요 운영기준 및 지원절차를 참여기업에 안내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정기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용역 수행상황, 컨설팅 만족도 및 참여기업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성 분석의 조사항목·조사방법 및 분석방향을 사전에 협의하여 객관성 관리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1-4.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 -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br>- 마케팅 및 홍보 성과분석 및 환류 노력 | 4.00 | 4.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 경기도·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내용 및 참여기업 모집을 지속적으로 홍보

○ 버스 외부래핑, 기업 밀집 오피스빌딩 미디어 광고 등 기업과 도민의 접점이 높은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인지도 제고

○ 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내용과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홍보와 유관기관 연계 홍보를 병행하여 참여기업 발굴 노력

○ 참여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과정과 성과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사업성과의 홍보·확산 기반 마련

## 2-2. 도정 이행 노력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2-1. 도정방침 이해도<br>(2-2-1-1. 고용안정 노력) | - 위탁사무 인계로 인한 기존인력의 고용승계<br>-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00 | 1.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고용승계 대상 없음

○ 사업 최초 위탁 시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행하고 있어 수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 대상은 없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2-1. 도정방침 이해도<br>(2-2-1-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 사회적기업, 친환경기업, 장애인·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br>- 위탁사무 물품구매시 재래시장·소형마트 이용 실적<br>-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부 노력(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화폐 활용 등 다양한 노력 포함)<br>-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1.00 | 1.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사업비 집행

○ 경기도 주 4.5일제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 참여기업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기업(경기도 031 쇼핑몰) 기념품 구매하여 배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구매 활성화에 기여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2-1. 도정방침 이해도<br>(2-2-1-3. 지역민간 전문가 활용 노력) | - 지역사회 공헌도<br>- 민간전문가 활용, 자원봉사자 활용 노력 및 성과를 평가 | 1.00 | 1.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사업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생산관리·경영·성과관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참여기업별 노동시간 단축제도 설계 및 근무지침 마련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함. 다만, 전문가 선정 시 경기도 지역전문가 활용을 별도 기준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2-2-2. 도정연계성 및 발전 기여도 | - 도정과제와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고, 도의 관련 담당자와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공식화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br>-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한 사무의 활동내역 및 개선노력과 성과는 적정한가?<br>- 위탁사무 개선방향 또는 발전방향 등 제안 여부 | 4.00 | 4.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도정과제 연계 및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정책 고도화

○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확산 정책과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컨설팅·기업지원·성과분석을 연계한 사업 추진

○ 경기도 담당부서와 월례회의 및 수시 업무협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기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함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수렴하고, 이를 사업 운영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환류

○ 전년도 사업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6년 단축장려금 지원수준 상향, 근태관리·IT솔루션·신규채용 지원 등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확대·개선을 위한 실증자료 축적

## 3. 사업성과

### 3-1. 사업성과

| 세부지표명(예시)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3-1-1. 사업성과지표 - 참여기업 모집 수 | - 목표 대비 참여기업 모집 실적의 달성률이 적절한가? | 8.00 | 8.00 |

평가의견(예시)

| 세부 지표명 | 연도 | 목표 (A) | 실적 (B) | 달성률 (C=B/A) | 배점 (D) | 득점(E=C X D)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
|---|---|---|---|---|---|---|
| 참여기업(민간) 수 (단위 : 개사) | 2025 | 50 | 106 | 212% | 8.00 | 8.00 |
| | 합계 | | | | 8.00 | 8.00 |

○ 2025년 참여기업 50개사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기업 모집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기업 직접 발굴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적극 확보하였음.

○ 그 결과 총 135개사를 선정하여 목표 대비 212%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함.

| 세부지표명(예시)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3-1-2. 사업성과지표- 참여기업 단축준수율 | - 참여기업의 노동시간 단축기준 준수 수준이 적절한가? | 12.00 | 12.00 |

평가의견(예시)

| 세부 지표명 | 연도 | 목표 (A) | 실적 (B) | 달성률 (C=B/A) | 배점 (D) | 득점(E=C X D)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
|---|---|---|---|---|---|---|
| 참여기업 단축준수율 | 2025 | 80% | 95% | 119% | 12.00 | 12.00 |
| | 합계 | | | | 12.00 | 12.00 |

○ 참여기업의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실제 노동시간 단축 여부와 임금 유지 여부를 관리함.

○ 참여기업 단축준수율 8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5년 95%를 달성하여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단축실적 미달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관리함.

| 세부지표명(예시)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3-1-3. 사업성과지표 - 참여기업 내 단축근무 참여율 | - 참여기업 내 근로자의 실질적인 단축근무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 10.00 | 10.00 |

**평가의견(예시)**

| 세부 지표명 | 연도 | 목표 (A) | 실적 (B) | 달성률 (C=B/A) | 배점 (D) | 득점(E=C X D)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
|---|---|---|---|---|---|---|
| 참여기업 내 단축근무 참여율 | 2025 | 60% | 71% | 118% | 10.00 | 10.00 |
| | 합계 | | | | 10.00 | 10.00 |

○ 기업 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실제 노동시간 단축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단축근무 참여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함.

○ 참여기업별 단축근무 참여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71%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18.3%의 성과를 달성함.

○ 아울러 참여기업의 고용유지율 100%를 달성하여 이직·인력유출이 빈번한 중소기업의 여건에서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과를 보임.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3-1-4.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목표 적절성 | - 사업여건, 수탁기관 업무 특성, 특이한 상황변화 요인 등을 포함하여 사업목적과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을 평가 | 15.00 | 13.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주4.5일제 사업으로, 임금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시범시업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냈음

□ 다만, 전국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 '25년 노동시간 단축제도 참여 기업 대부분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107개 참여기업 중 66개(61%)를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참여기업 수는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지원 노동자수는 계획 대비 1,000여명 적어 단축장려금 등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25년도 계획 : 기업수 50개(4,000명) / 결과 : 기업수 107개 3,050명

□ '26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적정 목표(신규 참여기업 45개사 목표) 수립하였으며, 전년도 사업의 경험과 효과성 분석을 통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고용이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는 '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사업대상 확대,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됨

### 3-2.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대외적 우수사례 | - 기관에서 판단할 때 수탁사무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우수사례 하나를 선정하여 그에 관한 내용과 우수성과를 평가 | 3.00 | 3.0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제도 성과 공유 및 확산

○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공유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성과·과제 논의를 위해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2026.3.10.)하여, 경기도지사·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노사단체·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가 동시에 가능함을 확인한 효과분석 결과 및 참여기업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노·사·정 각계의 정책 개선 의견을 수렴한 점이 우수함

○ 다만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제도 확산 방안 및 개선과제(대·중소기업 상생형 추진, 공공부문 선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향후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성과의 확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4. 지도점검 이행노력

### 4-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지도점검 이행률 | -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 점검, 외부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의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을 평가 | 2.50 | 2.50 |

**평가의견**

| 구분 | | 개선요구사항 건수(A) | 이행완료 건수(B) | 이행률%(C=B/A) |
|---|---|---|---|---|
| 협약 기간 내 지적 사항 | 경기도 감사 | - | - | - |
| | 경기도 지도점검 | - | - | - |
| | 의회행정사무감사 | 2 | 2 | 100.00% |
| | 회계감사 |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 2 | 2 | 100.00% |
| 득점(합계 이행률% X 2.50점) | | | | |

### 4-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지도점검 이행노력 | - 지적사항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탁사무의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이행조치 노력도를 평가 | 2.50 | 2.50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 (참여기준 개선) 25년 참여기업 모집 시 적용하던 규모 하한(5인 미만 기업 신청 제한)을 26년 모집부터 폐지하여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신청을 허용하였으며, 실제 26년 모집 결과 5인 미만 기업이 참여하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이행함

○ (선정심의위원회 독립성 및 심사체계 개선) 선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분야별로 전문가 구성을 다변화하였으며,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추진 의지를 참여기업 선발 가점 항목에 반영하는 등 선정심사 체계를 개선함

## 5. 만족도 제고노력

### 5-1. 도민 만족도 조사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도민 만족도 조사 | - 위탁사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 노력을 평가<br>- 자체만족도 조사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함<br>- 자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족도 제고노력을 15점으로 평가함 | 10.00 | 9.00 |

**평가의견**

| 구분 | 점수 |
|---|---|
|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기준) | 89.2 |
| 득점(=만족도 점수 /10) | 8.92 |

□ 위탁사무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시범사업 첫 시행에 따라 2025년도 만족도 점수는 4.46점(5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 시 89.2점임. 10점 만점 기준 적용 시 8.92점임

### 5-2. 도민 만족도 제고 노력

| 세부지표명 | 평가주안점 | 배점 | 득점 |
|---|---|---|---|
| 도민 만족도 제고 노력 | - 고객불편사항 개선 등 직접적인 개선노력<br>- 위탁사무 정보 관련 데이터의 개발,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합 연계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노력 및 성과 | 5.00<br>(15.00점) | 5.00<br>(15.00점) |

**평가의견**

| 점수부여기준 | 배점의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배점의 60%미만 |
|---|---|---|---|---|---|
| 평가의견 작성기준 | 평가주안점이 충분히 만족 | 평가주안점이 대체로 만족 | 평가주안점이 다소 만족 | 평가주안점이 미흡 | 평가주안점이 매우 미흡 |

□ 도민(참여기업) 의견 반영 및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 2025년 만족도 조사의 '향후 사업 운영 개선사항' 항목에서 1순위로 나타난 '지원금 규모 확대' 요구에 따라 2026년 단축장려금을 1인당 27만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1만원↑)하고, 2순위로 나타난 '신규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도민(참여기업) 의견을 사업 운영에 반영한 직접적인 개선노력을 이행함

○ 참여기업의 자료 제출·신청 방식을 기존 개별 이메일 수취에서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접수로 일원화하여, 신청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처리 현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제출 편의를 개선함

## 6. 종합 (핵심 우수 사항 2건 & 개선필요 사항 2건)

| 핵심 우수 사항 | 핵심 개선필요 사항 |
|---|---|
| □ (운영 실적) 2025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당초 목표(50개사)를 크게 상회하는 135개사를 선정·운영하고,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정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단축근무 스케줄 및 근로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br><br>□ (운영 매뉴얼·우수사례집 제작) 25년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에 배포함으로써 제도 이해도를 높였으며, 참여기업의 단축제도 운영 사례·성과를 수록한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신규 기업 모집 홍보에 활용하여 제도 확산에 기여한 점이 우수함 | □ (현장점검 강화) 참여 시기에 따라 제도 운영 성숙도가 상이(기존 참여기업은 정착 단계, 신규 참여기업은 도입 단계)한 만큼, 기업별 정기 현장점검(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여 제도 정착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할 필요가 있음<br><br>□ (예산 집행률 제고) 25년은 시범사업 1년차로 하반기 모집·운영에 따라 예산 집행 기간이 제한되어 집행률이 다소 낮았으나, 26년은 사업이 연간 단위로 정상 운영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행률을 지속 제고할 필요가 있음 |